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이행으로 「성주군 정보공개 조례」를 제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보공개의 목적 등 (안 제1~3조)
나.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(안 제4~8조)
다. 정보공개 수수료 (안 제9조)
라. 정보공개 심의회에 관한 사항 등 (안 제10~1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전략담당관-3834(2021. 11. 19.)]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없음 [가족지원과-48512(2021. 11. 19.)]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1. 23. ~ 2021. 12. 13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정보공개의 목적,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,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